

[별표 2의4] <신 설>

정보집합물 재사용 절차 및 방법 (제15조의2제8항 관련)

| 구분              | 절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행기관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정보<br>집합물<br>결합 |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(정보집합물 보관 목적),<br>결합키 생성의뢰 | 결합의뢰기관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결합신청서 수신,<br>결합키 생성 방식 결합의뢰기관 전달      | 데이터전문기관<br>금융보안원 |
|                 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결합키 금융보안원에 제공,<br>정보집합물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   | 결합의뢰기관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정보<br>집합물<br>보관 | 재결합 연계정보 생성<br>및 데이터전문기관에 제공          | 금융보안원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정보집합물 결합 및 이용기관에 반출                   | 데이터전문기관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정보<br>집합물<br>보관 | 정보집합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전송                  | 데이터전문기관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데이터전문기관의 정보집합물을 수신하여 보관               | 종합신용정보<br>집중기관   |

※ 결합의뢰기관은 결합전 정보집합물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관 가능



※ 상기 절차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집합물 보관 및 재사용 관련 업무절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금융보안원의 업무절차에 따름

※ 보관된 정보집합물을 추가 결합 없이 반출하려는 경우, 이용기관은 반출신청서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제출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은 적정성 평가 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보관된 정보집합물을 전달받아 이용기관에 제공

## 정보집합물 결합·제공·보관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

### I.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

- ① 데이터전문기관 중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결합한 정보집합물 및 결합 전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하지 않고 보관할 것
- ② 정보집합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서버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정보집합물을 보관하는 업무 목적외 접근이 차단되도록 관리할 것
- ③ 결합의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관하고 있는 정보집합물을 지체없이 삭제할 것

### II. 결합의뢰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

- ① 결합의뢰기관은 데이터전문기관 중 금융보안원이 결정한 결합키 생성방식에 따라 결합키를 생성할 것

### III. 금융보안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

- ① 결합키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며 결합의뢰기관 외에는 결합키 생성 방식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
- ② 결합키 생성 방식은 안전성, 보안성, 재식별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
- ③ 결합의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관하고 있는 결합키를 지체없이 삭제할 것
- ④ 결합키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분리된 조직, 시스템, 업무공간 등을 갖출 것

### IV. 데이터전문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

- ① 데이터전문기관은 결합의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집합물을 보관 목적으로 제공할 것
- ② 결합의뢰기관의 신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관하거나 재사용하는 정보집합물에 대한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할 것